

-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6.12.14(화)

제255회 정례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6년 11월 10일

○ 회부일자 : 2006년 11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255회 충청북도 정례회

○ 2006. 12. 14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가. 제안이유

- 각급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사립의유치원·초등학교·특성화중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각종학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조).
- 수업료는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고, 입학금은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하며, 전학·재입학·편입학 및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에 대한 징수방법을 정함(안 제3조).
-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감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함(안 제4조).
- 수업료 징수기일은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으나, 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로 하고,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에 의한 납부는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 과오납·전학 및 기타의 반환사유 발생시 반환 방법을 정함(안 제6조).
- 수업료 및 입학금 체납자에게는 가산금 등을 징수할 수 없으며, 퇴학처분자와 자퇴한 자의 미납 수업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교육사회전문위원 : 김재준)

- 동 조례안 제정은 교육인적자원부령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의해 운영되던 각급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이 2005. 3월 25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조례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4조제1항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의 세부기준을 교육규칙에 위임함에 따른 세부 기준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한한다)·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와 동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동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한한다)·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3조 (징수방법) ①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의하여 4기(방송통신 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입학교 급지가 전출학교 급지보다 상위 급지일 경우 전입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급지 차액을 징수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 징수한다.

④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⑤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제4조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학교의 장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③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④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5조 (징수기일) ①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50일이내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 학비 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제6조 (수업료 등의 반환) ①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의 반환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설립자가 동일한 하위급지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급지 차액을 반환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중인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할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 (가산금 등) ①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할 수 없다.

②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학교를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수업료 기별 징수 구분(제3조제1항 관련)

기 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상 반 기		하 반 기	
일 자	3.1~5.31	6.1~8.31	9.1~11.30	12.1~익년 2월말

[별표 2]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제6조제3항 관련)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액	비고
당해 분기 개시일 (입학 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까지	수업료 또는 입학금 전액	
당해 분기 개시일 (입학 생의 경우에는 입학 일 을 말한다)의 다음날 이 후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 다	

관계법령 발췌

□ 유아교육법

제25조 (교육비용 등) ①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 교육대상 유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여부
3. 당해 지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여부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10조 (수업료등) ①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5.3.24>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7398호, 2005.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30조의3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 중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부분과 제30조의6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의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특성화중학교) ①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1.10.20>

②제1항의 고시에는 학교명·학급수·학생모집지역 및 그 적용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④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0조 (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1.3.2>

1. 기계·전기·전자·건설등 공업계열의 고등학교
2.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
3. 수산자영자 양성을 위한 수산계열의 고등학교
4. 선원 양성을 위한 해양계열의 고등학교
5.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8.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9.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②제1항의 고시에는 학교명·설치학과·학급수·학생모집지역 및 적용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20>

②제90조제2항의 규정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5조 (학교운영의 특례)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지정한다. <개정 2001.1.29, 2004.2.17>

②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2.17>

③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2.17>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특성화중학교

4. 특성화고등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다만,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자율학교의 장은 제16조·제24조·제68조·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⑤제34조제6항의 규정은 자율학교의 산학겸임교사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는 "자율학교"로 본다. <신설 2001.10.20>

⑥삭제 <2004.2.17>

⑦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2.17>

⑧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